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
운영조례개정조례(안)에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1998. 11. 4

제안자 : 관광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과징금의 납부를 독촉함에 있어 납부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한 모범 즉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용한 용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함

2. 수정 주요골자

안 제2조중 “10일 이내의”를 “10일 이내로”로

안 제7조 제2항중 “운수사업가”를 “운송사업가”로 수정함.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
운영조례개정조례(안)에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

안 제2조중 “10일 이내의”를 “10일 이내로”로

안 제7조 제2항중 “운수사업자가”를 “운송사업자가”로 한다.